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09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의자 : 배준영 · 추경호 · 김석기  
김위상 · 서명옥 · 서지영  
김성원 · 이상휘 · 조은희  
정동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